

제434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8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상정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송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기초의회 의원정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0시12분)

○위원장 송기현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인천광역시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3명 증원해서 의결했던 기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더해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하는 영종구 등 신설 자치구의 변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대표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인천광역시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추가로 3명 더 늘린 총 128명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윤건영 간사님이나 서일준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건영 위원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어제 여야 정개특위 간사와 원내수석대표들 간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는데요. 취지는 그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행정구역 체제가 개편이 됩니

다. 그래서 영종구라는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는데요. 출범에 따른 기초의회 의원정수, 최소정수가 기초단체당 기초의원 7인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천에 지역구를 두신 3개 지역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 제기를 여야 원내지도부 그리고 정개특위 간사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인천지역의 기초의원 정수를 종전보다 3명 더 증원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송구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좀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 인천이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기초단체가 늘어나는 광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 개정안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현 서일준 간사님, 특별히……

○서일준 위원 저희도 조금 전에 윤건영 간사님 말씀처럼 인천광역시에서 문제 제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신설되는 영종구에 최소정수를 먼저 확보해 주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에서 1명씩 감을 해 가지고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총장님께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있잖아요. 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단체 간에 플러스마이너스 감하는 이거는 법규상 있더라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령 A 자치단체에 기초의원 1명당 인구가 1만 명이고 B 단체는 2만 명이 돼서 A 단체를 1명 빼서 감을 하고 B 단체에 1명 늘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영종구를 최소정수 확보를 해 주려고 보니까 전체 총정수가 안 맞으니까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의 기초의원을 1명씩 감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요. 아무튼 여타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자치단체 간 이동을 시키면 안 되고 자치단체 안에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안에서 광역이 늘어난다든지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거는 그 안에서 형평을 맞춰 주어야지, 자치단체 간의 역사성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위원님, 지금 선거법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달리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획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획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도에 설치된 획정위하고 시도 조례하고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시·군 의원정수를 정할 때는 획정위원회가 시도별 총정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 읍면동 수 비율,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만들어서 시도의회에 제출하면 시도의회에서는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존중해서 만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시도의회에서는 자치구·시·군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지역구, 자치구·시·군을 위한 지역구의 명칭, 관할구역, 지역구 정수만 정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단체 간에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관위에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전국에서 아무런 변동 요인이 없는데, A 자치단체는 가만히 있었는데 1석 줄고 B 자치단체는 1석 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번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데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중대선거구 시범실시로 인해 가지고 1명 증원하는 것, 또 하나는 광역선거구가 늘어날 때 기초의원이 1명 증원되는 것, 또 하나는 이번에 자치단체가 신설되면서 최소정수를 보장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말고는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해석대로 한다면 단순히 인구가 늘어났다고 그 자치단체에 기초의원을 1석 더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지금 전국에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아마 2005년도에 유권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23조 1항에 있는 법문에 충실해서 자치구·시·군 의원정수는 획정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읍면동 수 비율,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도의회에서는 자치구·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시·군 안에서 선거구별 명칭, 관할구역 정수만 규정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개특위에서 인구가 줄어들었거나 인구가 감소했다고 광역의원선거구를 줄여 버리면 그건 당연히 기초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광역의원 숫자가 그대로인데 기초만 줄어든다?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선관위에서 그 부분의 해석을 좀 자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현** 서일준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석하는 원칙이 있지만 최대한 각 자치구 간에, 자치구와 자치구 사이,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어떤 역사성이나 거기에 기초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존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니깐요, 앞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업무 지도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현**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저와 인천시민들의 간곡한 요청을 들어 주신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장님과 애써 주신 서일준 간사님, 윤건영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현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오늘 공직선거법은 빠뜨렸던 영종구 설치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증원하는 안건입니다마는 이것과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이번에 지방의원 출마자 중에 무려 전과 15범까지도 출마했다는 기사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전과자 문제가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특히 일반 국민보다 선출직 입후보자들의 전과자 비율이 더 높다는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범죄 이력은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비후보는 물론이고 이게 또 본선거에 앞서서 당내 경선에서도, 특정 지역은 당내 경선에서 선정이 되면 거의 뒤편에서는 당선되는 그런 지역들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범죄 경력에 대한 정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에 들어가 보면 범죄 경력 조희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들어가도 전과 몇 범 이렇게 돼 있지 세부 범죄 내역이 어떤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범죄 경력, 범죄 이력들을 좀 더 알기 쉽게 또 그리고 공개 범위를 사전적으로 당내 경선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비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경력에 대해서 조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비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범죄 경력 그 부분을 자료를 받기 때문에 등록하고 나서 그 등록 정보를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 규정이 없어서 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예비후보자 정보에 들어가도 상세정보에도 그냥 전과 몇 범만 나와 있지 어떤 전과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현 우선 이것 대체토론하는 과정이니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의결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사무총장님께 질문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존경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송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후속 사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님들 괜찮으시겠지요? 위원님들 사무총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거나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윤건영 위원 1분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송기현 그러면 우선 임미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간사님 하시는 걸로……

○임미애 위원 사무총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할 때 부대의견으로 이런 걸 달았어요.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한다’라는 얘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4일 날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중대선거구를 확대한다라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대구시의 경우 기초의회 선거구가 43곳인데요. 그중에 2인 선거구를 18곳 그리고 3인 선거구를 23곳, 4인과 5인 선거구는 각각 1곳으로 했습니다. 이 4인과 5인 선거구는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곳, 여기를 제외하고는 원래 선거구 획정위가 내놓은 안은 2인 선거구가 4곳이었어요. 4곳이었던 것을 다 쪼개 가지고 18군데로 만들었어요. 과거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저는 긴 시간 동안 정개특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너무 회의감이 듭니다. 기존의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에서 선거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2인 선거구로 쪼개지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부칙으로 달아서 22년도에 선거를 3인 이상 선거구로 했던 곳은 가급적이면 쪼개지 않고서 인구수에 큰 변동이 없는 한은 기존의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실제로 여야 간의 합의 중에 이게 통과되지 못했고 그러면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났는데, 부대의견 달면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마지막 회의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행안위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정개특위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좀 존중해 달라, 그것이 시도의회에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구와 경북은 기본 정신이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이런 식으로 정개특위에서 결정하는 것 따로 있고 시도의회에서 특정한 정당이 독점하고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짬짜미 식으로 선거구가 확정되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 그냥 이렇게 두어야 하나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개특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4월 17일, 4월 21일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지방의회의원선거구가 확정되도록 해 달라고 시도에 설치된 확정위원회 그리고 시도의회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만 대구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안타깝게도 그렇게 수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 업무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지만 시도 조례 제정하는데까지,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 1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기헌 예.

○임미애 위원 이것 정개특위에서 부대의견을 달든……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입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 정개특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 부대의견 다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입법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기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간사님.

○윤건영 위원 윤건영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 같이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장님, 그러면 선관위에서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회 입법정책적으로 중대 선거구를 유지하자라고 했고 선관위도 그 의견에 동의했고 그런 지침을 내렸는데 시도 확정위가 그걸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관위가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지금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윤건영 위원 아니, 일정이 촉박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시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이전에 입장을 내셔야지요. 잘못된 거다. 내부적으로 지침만 내리면 뭐 합니까? 입장을 내실 의향이 있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지금 선거구 획정이 인천만 획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통과됐거나……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구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4개였던 게 18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인 선거구라는 건 째짜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선거 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는 선관위가 입장을 안 내면 누가 입장을 냅니까?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정개특위도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의 뜻에 전혀 배치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도 확정위가?

그러면 정개특위도 입장을 내야 되고 선관위도 입장을 내야지요. 그걸 왜 모른 척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건영 위원 입장 내십시오,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단호하게 해야지요.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정개특위 논의를 한 게 물거품이 되는데요,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서일준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기초의원들의 정수가 늘어난 부분들을 이번에 세 가지로 유형을 특정했지 않습니까? 광역의원이 늘어날 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이번에 기초단체의 정수 조정.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손을 대지 말자라는 취지가 깔려 있는 건데 시도 획정위가 이걸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지역에서 혼란만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선관위에서 의견을 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이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걸 받아서 우리 정개특위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05년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시면 인구가 증감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서구·남동구·중구 이게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세 지역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이 세 지역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앞서 서일준 간사님처럼 그 취지를 받들어서 선관위에서 제도개선책을 내고 정개특위도 또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검토해서 개정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현 서일준 간사님.

○서일준 위원 총장님, 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사실은 3인 선거구를 쪼개 가지고, 4인 선거구를 쪼개 가지고 2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어떻게 했는지, 대구시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데가 중구 가, 서구 라, 남동구 라 선거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의회에…… 한 명씩 주는 바람에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이 이 해당 지역 선거구민들 또 입후보자들이 혼란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문수 김승수 김은혜 김재섭 김한규 배준영 서일준 송기현 송재봉 윤건영
윤준병 이상식 이해식 임미애 임종득 조승환

○청가 위원(1인)

박덕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박연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법제국장 박세진